

「2024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3. 4.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 원 대 상	▪ 인천시 거주 18~39세 미취업자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선 정 인 원	▪ 700명
접 수 기 간	▪ 2024. 3. 4.(월) ~ 3. 22.(금) 18:00까지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 정 절 차	▪ 신청서 접수 → 정량평가 → 지원대상자 선정
선 정 발 표	▪ 2024. 4. 15.(월) 예정 ※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선정 취소
지 원 내 용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e음 20만원 병행 지급
지 원 향 목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 (직접비) 교육비, 도서구입비, 독서실 등록비 등 - (간접비) 사무용품비,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의약품비 등 ※ 자격증 접수비 지원제외 ("2024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으로 신청→군·구 신청) ▪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연계) ▪ 지원 중 취·창업 시 취업축하금 지원(6회분 전액 지원자 제외)

□ 신청자격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나 이) 18~39세이하인 자 ※ 2024. 1. 1. 기준(1984. 1. 2. ~ 2006. 1. 1. 출생자)
- ② (거 주) 공고일(2024. 3. 4.)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본인)
- ③ (대 상) 공고일(2024. 3. 4.) 기준 미취업자(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신청불가)
- ④ (소 득) 중위소득 50%초과~15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24년 1월, 2월 고지액)
- ⑤ (학 력)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위 자격 조건은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나 이 : 18~39세 이하 ※ 2024. 1. 1. 기준(주민등록상 1984. 1. 2. ~ 2006. 1. 1. 출생자)
- 거주지 : 공고일(2024. 3. 4.)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인 자
- 미취업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 가능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가구 기준중위소득 : 50%초과~150%이하
 - 2개월 동안 사업 신청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 중위소득 인정액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50%이하(건강보험료 월 고지액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455원 ~ 119,657원	25,194원 ~ 61,984원	해당없음
2인	78,455원 ~ 196,672원	25,194원 ~ 146,739원	79,339원 ~ 199,492원
3인	100,672원 ~ 251,147원	32,532원 ~ 210,599원	101,574원 ~ 255,837원
4인	123,054원 ~ 304,986원	63,760원 ~ 271,091원	124,034원 ~ 314,423원
5인	144,011원 ~ 360,818원	94,385원 ~ 332,772원	145,558원 ~ 377,299원

※ 가구원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2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원 산정

■ 최종학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구 분		재(휴)학생	졸업생	
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참여불가	참여가능	
②	2~4년제 대학(원) 등 각종 학교	일반대학(원)		참여불가
		야간대학(원)		참여가능
		원격대학		참여가능
		학점인정제		참여가능
③	기타 학교	참여불가		

* 졸업유예, 졸업예정은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군 복무중인 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기간 내 군복무 예정자
- 2024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 기준(50%초과~150%이하) 미충족자
-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로 수급 받고 있는 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이 있을 시 신청불가(*2023. 9. 3. 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2019~2023년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참여이력 보유자(2023. 9. 3. 이후)
 -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중복) 또는 순차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되는 타사업에서 우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순차 참여 불가할 수 있음

사 업 명	동시 참여		순차 참여	
	가능	불허	종료 직후	종료 6개월 후
생계급여		○	○	
실업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		○		○
내일배움카드	○		○	
직업훈련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 참여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중단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미참석 시 선정 취소(사전 소명 및 참석 기일 협의 가능)
- 드림체크카드 지원기간 내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2회 의무 참여
 - 미참여 시 지원중단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중단 신청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III

제출서류

- 1)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3. 4.) 이후 발급분만 인정**
 - 2) 해당파일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 * 출력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글 또는 워드 작성파일과 화면 캡처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3)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2024. 3. 22. 18:00까지) 기준 홈페이지 업로드 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 업로드되지 않은 구비서류 있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모집공고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추가공고 진행 시 서류 제출 기한까지 보완 서류 추가 제출 완료 후 모집 대상으로 인정 가능

- 제출처 :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업로드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스캔 후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별 발급방법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내 공지사항 참조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혼 : 부모님 기준, 기혼 : 본인 기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 구성원) 각 1부.
 - 건강보험료 합산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 모두 한 장에 작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가족 구성원 모두)
 - 미혼 : 부, 모, 본인 / 기혼 : 배우자, 본인, 자녀
 - 건강보험료 2개월 납부확인서 각 1부. (2024. 1월, 2월 고지된 보험료)
 - 신청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모두
- 해당자만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만 해당)
 -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산점 서류

□ 신청 및 접수

- 참여신청 :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2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안 내	
필	본인	1. 참여신청서	■ 신청자 오기 입력 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입
		2. 구직활동계획서	■ 구직활동 목표 및 계획, 이력서 형식의 계획서 내용 작성
		3.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발급분 사용불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확인) 될 수 있도록 발급 ■ 과거 주소변동 이력 등 전체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발급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발급분 사용불가) ■ 본인이 최종으로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간주함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5.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발급분 사용불가) ■ 미혼인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기혼인 경우 : 본인 기준 발급 ※ 기준 미준수로 인한 서류발급으로 가족구성원 확인이 안될 시 구제 불가
수	아래 6~8 서류 : 미혼(부·모·본인), 기혼(본인·배우자·자녀) 필수		
	■ 그 외 중위소득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형제자매, 조부모 등)은 개인정보동의, 건강보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 결정		
	본인 및 가구원	6.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서 한장 에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작성 ■ 신청인 본인 필수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가구원 전원 필수 작성(누락 시 지원 불가) ※ 작성인 자필 서명 필수(누락 시 불인정)
7.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미혼 : 본인·부·모 (필수)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형제/자매의 경우 신청자가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기혼 : 본인·배우자 (필수) 등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2024년 1월, 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 발급 및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확인서 발급 제한시 납부고지서로 대체 가능	
해당자 (선택)	9. 근로계약서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취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참여 제한 ■ 인적사항 및 근로조건, 기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10. 사회적배려대상자	■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 분	발 급 방 법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 ※ 접속링크(https://www.gov.kr/portal/main)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 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 ※ 접속링크(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행정복지센터(무인발급기) ※ 접속링크(https://www.gov.kr/portal/main)
최종학력 관련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등 행정복지센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 사업자등록 유무 관련 내용 서류O, 소득관련 내용X ※ 접속링크(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검색

-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자료 확인
 - 모든 서류는 접수기한 내 제출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미제출 또는 잘못 제출한 경우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IV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온라인 신청

구 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	
회원가입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	
참여신청	드림체크카드 "신청하기" 메뉴 접속 후 신청
▼	
신청서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등 작성
▼	
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촬영된 파일) ※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로 통일

V

선정 방법

- 가구 기준중위소득 및 인천시 거주기간, 미취업 기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평가

항목 (배점)	기준중위소득 (40점)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미취업기간 (30점)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산(10점)
정량 평가	공고일 직전 2개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2024. 1월, 2월)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취업이력이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취업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 > 기준중위소득 > 인천시 거주기간 > 미취업기간 순으로
평가수치가 높은 인원 우선선발

VI

최종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24. 4. 15.(월) 예정
 - ※ 발표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선정자)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목적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
 - 필수 확인사항
 -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e음카드 개설, 서약서 제출 (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 기타 카드사(은행)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VII

기타 유의사항

- 참여신청은 온라인(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본인이 기재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입력 요망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반드시 신고
-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지원중단 처리
-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드림체크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할 수 있음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 화 : **032) 725-3072~3**

[별첨1] 중위소득 산정대상 및 제출서류 (본인 확인)

< 중위소득 산정대상 및 제출서류 >

① 미혼인 경우(참여자 기준)

- (원칙) 부·모·본인은 기본(필수) 산정대상
 -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산정대상 포함가능(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 형제·자매포함 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필수
- (심사)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고지액) 확인

< 확인 사례 >

① 부·모 모두 있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3인,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건강보험 서류

② 한부모 가정(사별, 이혼 등)

- 가. 가구원 수 : 2인
- 나.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본인 건강보험 서류
 - ※ 위 서류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 기준으로 제출

③ 부·모 모두 없는 경우(사망, 실종 등)

- 가. 가구원 수 : 1인
- 나. 제출서류 : 1인가구 증빙자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건강보험 서류

④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부·모·본인+형제·자매 포함 인원 수(부·모 중 없는 인원 제외)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형제·자매 건강보험 서류

* 단, 중위소득 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산정 간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유/불리한 경우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시킬 수 있음

2] **기혼인 경우(참여자 기준)**

- **(원칙)** 본인·배우자·자녀는 기본(필수) 산정대상
※ 동거 중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포함가능
(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심사)**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고지액)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고지액)을 통해 확인

< 확인 사례 >

① **본인·배우자만 있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2인, 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건강보험 서류

② **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있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2인+자녀수,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 서류
※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 생략 가능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동거 중인 경우**

- 가. 가구원 수 : 2인+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수,
본인+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위 가구원의 건강보험 서류

※ **한부모 가정(사별, 이혼 등)**

- 본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의 기준에 해당
* **자녀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불가**

3]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로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 또는 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단, 단순 불화 등으로 인한 관계단절의 경우 1인가구로 인정 불가**

①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이혼소송·심판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아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② **교도소 등 수감되었으며 관계단절**

→ 수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별첨2]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점대상 범주 및 확인 방법 (본인 해당)

《 사회적배려대상자 확인방법 》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요) 확인
-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⑤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⑥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⑦ **여성가장** :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
- ⑧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확인서